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로 한다.

별표 제4호, 제9호, 제15호, 제16호, 제19호, 제21호, 제23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8호를 삭제한다.

-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
- 15. 「경륜・경정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죄
- 16.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
- 19. 「고등교육법」 제64조제2항제2호의 죄
- 2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의 죄
- 2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70조제2항제2호의 죄
- 2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8조 및 제59조의 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형법」이 적용되는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서 죄질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범죄피해재산에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 대통령권한대행 황교 안 인 국 무 총 리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홍 윤 식 장 관 (법무부 소관)

●법률 제14411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제6조에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7. 제5조제50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범죄
 - 가. 「원자력안전법」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20조에 규정된 범죄
 -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 제50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1조에 규정된 범죄
 -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원자력 안전 등 관련 행정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황교 안 ① 국 무 총 리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홍 윤 식 장 관 (법무부 소관)

◉ 법률 제1441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16조제2항 본문 중 "선고하는"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선고할"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벌금형을 선고할"을 "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로 한다.